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수흥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047

발의연월일: 2022. 6. 20.

발 의 자: 김수흥 · 김경만 · 김교흥

김민철 · 김성주 · 김홍걸

안규백 · 양정숙 · 윤준병

이명수 · 한병도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코로나19 장기화로 쌀 소비가 감소하면서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, 농산물 시장개방(CPTPP 가입) 압력 확대, 잦은 이상기후 등으로 농업부문의 어려움을 계속되고 있음.

이러한 상황에서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특례가 축소된다면 농산물 생산기반이 위축되고,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등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임.

이에 농업부문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·축산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2022년 12월 31일 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부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 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(안 제69조의2제1항).
- 나.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(안 제71조제1항).
- 다.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(안 제72조제1항).
- 라.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및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 이 자소득에 대한 비과세·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3년간 연장함 (안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).
- 마. 농업용·축산업용·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 세 영세율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 (안 제105조제1항).
- 바.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·축산업용·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 까지로 3년간 연장함(안 제106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9조의2제1항 본문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5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5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5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5년 12월 31일"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"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"을 "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"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"2024년 1월 1일"을 "2027년 1월 1일"로 한다.

제89조의3제1항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5년 12월 31일"로, "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"을 "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2024년 1월 1일"을 "2027년 1월 1일"로 한다.

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5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5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9조의2(축사용지에 대한 양도	제69조의2(축사용지에 대한 양도
소득세의 감면) ① 축산에 사	소득세의 감면) ①
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	
(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	
"축사용지"라 한다) 소재지에	
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	
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	
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	
는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	
<u>2022년 12월 31일</u> 까지 양도함	<u>2025년 12월 31일</u>
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	
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	
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	
다만,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	
에 편입되거나 「도시개발법」	
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	
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	
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	
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	
편입되거나, 환지예정지 지정을	
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	
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	

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

② ~ ④ (생 략)

제71조(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 면)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·초지·산림 지·어선·어업권·어업용 토지등· 염전 또는 축사용지(해당 농지· 초지·산림지·어선·어업권·어업 용 토지등・염전 또는 축사용지 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 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농지등"이라 한다)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[양축(養畜), 영어(營漁) 및 영림(營林)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(이하 이 조에서 "자경농민등" 이라 한다)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직계비속(이하 이 조에서 "영농자녀등"이라 한다)에게 20 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

<u>.</u>
·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세71조(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
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
면) ①
20
<u>25년 12월 31일</u>

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

1. ~ 3. (생략)

② ~ ⑧ (생 략)

제72조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세 과세특례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인세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 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「법 인세법 시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 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 익[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 한 당기순이익(當期純利益)을 말한다]에 「법인세법」 제24 조에 따른 기부금(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 한다)의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 대비(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)의 손금 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

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 ~ ⑧ (현행과 같음)
제72조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
세 과세특례) ①
<u>2025년 12월 31일</u>

액에 100분의 9[해당금액이 20 억원(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법인간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법인의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40억원을 말한다)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 0분의 12]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(이하 이 조에서 "당기순 이익과세"라 한다)한다. 다만,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 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 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 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.

- 1. ~ 8. (생략)
- ② ~ ⑥ (생 략)

제88조의5(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) 농민·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 주자를 조합원·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명 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

1. ~ 8. (현행과 같음)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세88조의5(조합 등 출자금 등에
대한 과세특례)

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·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(이하 이 조에서 "배당소득등"이라 한다) 중 2022 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,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「소득세법」 제129조에도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,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.

- 1. <u>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</u> <u>12월 31일</u>까지 받는 배당소 득등: 100분의 5
- 2. <u>2024년 1월 1일</u>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: 100분의 9

제89조의3(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 저율과세 등) ① 농민·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 주자를 조합원·회원 등으로 하 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 서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

2025
년 12월 31일
,
1.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
<u>12월 31일</u>
2. 2027년 1월 1일
세89조의3(조합등예탁금에 대한
저율과세 등) ①

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(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, 이 하 "조합등예탁금"이라 한다)에 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, 2 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 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 득에 대해서는 「소득세법」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, 그 이자 소득은 「소득세법」 제14조제 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에 합산하지 아니하며, 「지방 세법」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② 2024년 1월 1일 이후 조합 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 득에 대해서는 「소득세법」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, 같은 법

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

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,

「지방세법」에 따른 개인지방

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
<u>2025년</u>
12월 31일
<u>2</u>
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
31일
② 2027년 1월 1일

제105조(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	제105조(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
용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<u>8</u>) ①
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	
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	
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바에 따라 영(零)의 세율을 적	
용한다. 이 경우 제3호 및 제3	
호의2는 2023년 12월 31일까지	
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	
고, 제5호 및 제6호는 <u>2022년 1</u>	<u>2025년 1</u>
<u>2월 31일</u> 까지 공급한 것에 대	<u> 2월 31일</u>
해서만 적용한다.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06조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	제106조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②
② 나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	
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	
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	②
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 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이 경우 제9호는 <u>2022년 12월</u>	②
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 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이 경우 제9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	②
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 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이 경우 제9호는 <u>2022년 12월</u> <u>31일</u> 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, 제22호는 2024년 12	②
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이 경우 제9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적용하고,제2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	②